[별표 1]

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요건(제3조제1항 관련)

1. 동물원

구분	등록요건
가. 시설	다음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1) 사무실 또는 연구실 2) 전시시설 3) 사육시설 4) 동물 진료시설 또는 격리시설
나. 전문인력	다음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1)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명 이상(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) 2) 동물의 분류군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축산기술사, 자연환경관리기술사, 축산(산업)기사, 생물분류기사(동물), 자연생태복원(산업)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수의학, 축산학, 동물학, 동물자원학, 애완동물학, 생물학, 생태·생리학 또는 산림자원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)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

비고

1. 동물의 분류군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   가. 포유류
   나. 조류
   다. 양서류·파충류
2.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2)의 전문인력을 동물의 분류군에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만 갖추면 된다.

가.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40종 이상인 경우: 2명 이상

나.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40종 미만인 경우: 1명 이상

2. 수족관

구분	등록요건
가. 시설	다음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1) 사무실 또는 연구실 2) 전시시설(수조를 포함한다) 3) 생물 진료시설 또는 격리시설(수조를 포함한다) 4) 해수 또는 담수의 공급 및 정화시설
나. 전문인력	다음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1)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또는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1명 이상(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) 2) 생물의 분류군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수의학, 수산생명의학, 수산학, 동물자원학, 애완동물학, 생물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) 수생생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

비고

1. 생물의 분류군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포유류・양서류・파충류・조류

나. 해조류・해초류・무척추동물

다. 어류

2.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2)의 전문인력을 생물의 분류군에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만 갖추면 된다.

가. 보유한 생물의 종이 총 40종 이상인 경우: 2명 이상

나. 보유한 생물의 종이 총 40종 미만인 경우: 1명 이상